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3.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증원되는 인력 5명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 행정자치부의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정원 불부합 현원에 대하여 인원의 조정 및 해소기간의 연장 등 관련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2,498명에서 2,503명으로 조정 (증원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8명 ⇒ 1,443명 (증원 5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960명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6명 (변동없음)

○ 정원조례 부칙개정 : 초과현원 유예기간 연장 (중평 6급 5명)

- 유예기간 : 2003. 2. 28 → 2003. 8. 31 (6개월 연장)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204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였으나,

도의 증원요구와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결과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청의 지도기능 보강 2명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보강 3명
등 5명을 증원하고,

중평출장소의 초과 현원(6급 5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2003. 2. 28 ⇒ 2003. 8.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정원 불 부합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초과현원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임.

붙임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